조선초기 工商의 身分*

최 이 돈

1. 서언
2. 工商과 官職
3. 工商과 科擧
1) 科擧 응시의 규제
2) 科擧 응시 규제의 時期
4. 工商 官僚의 差待
1) 流品職 공상 관료의 差待
2) 非流品職 공상 관료의 差待
5. 工商의 世傳
6. 결언

1. 서언

조선전기 신분제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양천제의 제기와 그에 따른 논쟁은 신분사 연구에 이론과 실증의 면에서 큰 기여를 하였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기왕에 노출되었던 자료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새로운 자료도 발굴되어 신분제의 실증적인 면에 진전이 있었다. 또한 신분에 대한 정의, 신분제를 바라보는 관점 등이 재정리 되면서 신분에 대한 이론적인 면에서도 발전이 있었다.[1] 논의가 진행되면서 양천이 조선전기의 신분제도 상 가장 중요

* 본논문은 2006년도 한남대학교의 교비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1) 한영우, 1977, 「조선초기의 사회계층과 사회이동에 관한 시론」, 『제8회 동양학학술회의강연초』, 동양문화연구소.
이성무, 1980, 『조선초기양반연구』 일조각.
한영우, 1982, 「조선초기 신분계층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과학논평』 창간호.
송준호, 1983, 「조선양반고」, 『한국사학』 4.
이성무, 1984, 「조선초기 신분사연구의 재검토」, 『역사학보』 102.
한영우, 1985, 「조선초기 사회계층연구에 대한 재론」, 『한국사론』 12.
유승원, 1986, 『조선초기 신분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 경계라는 합의도 이루어졌다.[2)]

그러나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 문제는 양신분 내의 여러 계층을 신분으로 볼 것인가 계급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양인은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에서 동질한 집단인가의 문제가 남는 것이다. 양인은 천인이 아닌 천인 밖의 집단이라는 외형적인 분류 뿐 아니라 내적으로 신분적인 통일성을 가지는 집단이어야 하는데, 양인 내의 신분적 동질성이 무엇인가를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초기의 공인과 상인의 신분적 지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3)] 그간의 연구성과들은 공상의 지위는 양인 내에서도 좀 특별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상에 대한 연구는 강만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4)] 그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장을 연구한 것이었으나, 공장의 成分과 受職이라는 장을 두고 있다. 공장의 성분에서는 공장이 양인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관직과의 관계에서는 잡직의 설치과정을 논하였다. 이성무는 잡직계를 정리하면서 공상의 지위를 검토하였다. 그는 잡직계를 '천인이 받는 관직과 관계'라는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으나, 공상이 잡직계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에 별다른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5)]

한영우는 양인이 하나의 신분이고 사농공상은 양인내의 작은 직업 계층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공상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인 구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영우가 공상에 대해서 '과거응시자격이 신분적으로 금지된 것'[6)]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공상에게 과거응시자격이 '신분적'으로 금지되었다면 이를 양인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영우는 공상의

유승원, 1987,『조선초기 신분제 연구』을유문화사.
한영우, 1997,『조선시대 신분사 연구』집문당.

2) 이성무, 앞 책.

3) 공인과 상인은 엄연히 다른 직역이었으나, 당시 신분과 관련된 상당수의 자료는 공인과 상인을 공상으로 묶어서 취급하고 있어 당시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같은 묶음으로 파악되는 직역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이들이 같이 처리되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 강만길 1961,「조선전기 공장고」,『사학연구』12.

5) 이성무, 앞 책.

6) 한영우, 1997,「조선초기의 사회계층과 사회이동에 관한 시론」,『조선시대 신분사 연구』집문당.

과거응시 금지에 대해 거듭 언급하고 있어[7] 공상을 좀더 깊이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성무와 한영우의 공상에 대한 입장이 이러하였으므로 양천제의 논쟁에서도 공상의 문제는 별다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양천제의 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유승원은 공상의 신분적 지위에 대하여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공상의 지위에 대한 정리 없이 양천론은 그 논리적 일관성을 가질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 먼저 그는 공장에 대하여 잡직계의 설치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공장의 신분적 지위를 검토하였다.[8] 그는 양천론의 입장에서 공장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였고, 잡직계의 설치 과정을 "공상천예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유외관직을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라고 '합리적'인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품직을 가지고 있던 공장이 잡직계를 부여받는 차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유승원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는 공상의 신분적 지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 그(공상)가 다른 경로로 입사하려 할 경우에도 공상의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유품직의 진출이 금지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의 응시나 관학의 입학에 지원자의 생업조건까지 조사하고 문제삼았을지는 의심스럽다. 더구나 공상인의 자손이 그 부조의 직업이 미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환권의 제약을 받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9]

그는 공상 본인이 다른 경로로 입사 즉 과거 응시를 통해서 유품직에 진출할 수 있고, 공상의 자손이 사환권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가정을 근거로 "공상인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직업집단에 불과한 존재이지 법제적인 세습집단=신분집단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

---

7) 한영우는(「조선초기 신분계층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최영호의 연구를 검토하면서 최영호가 공상의 과거응시불가를 지적한 것은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영우는 이 연구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영호는 위 논문에서 공상의 과거응시불가를 제시하였을 뿐 논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은 한영우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8) 유승원, 앞 책.

9) 유승원, 앞 책.

고 있다.[10] 유승원은 가정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를 “공상인의 권리는 인정도 부인도 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나타난다”라고 자료의 불분명함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유승원의 주장은 공상의 신분적 지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거의 없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에 공감이 간다.

그러나 공상의 지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몇가지의 이유로 좀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1) 이미 연구에 드러나 있듯이 공상의 사환권을 부정하는 자료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 일반양인의 사환권을 부정하는 기록이 없다는 점에 상기해 본다면 공상의 사환권의 부정은 특이한 현상이다.

2) 공상으로서 이미 유품직에 임명되어 관료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까지도 단지 공상이었다는 이유로 잡직계라는 별도의 산계를 만들어 천예와 함께 소속하도록 하는 차대가 시행되고 있었다. 공상을 천예와 함께 묶어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은 특별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3) 공상은 양인의 보편적인 의무라고 파악되는 군역도 지지 않아 군역의 관점에서 보아도 공상은 일반양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4) 아직 가설에 불과하지만 최영호나 한영우에 의해서 공상의 과거응시가 불가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를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상황을 종합할 때에 공상의 지위는 일반양인과는 다른 특이한 것으로 이해 될 수 있고 좀더 검토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고는 공상의 신분적 지위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공상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는 후일의 과제로 미루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공상이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는가? 공상인 관직에 임명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많다. 그러나 역시 많은 자료가 공상의 관직임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공상을 관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정리하면서 공상과 관직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공상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는가? 양인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10) 유승원, 앞 책.

주장이 양천제의 중요한 입론이었다. 그 입론에 의하면 당연히 공상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상의 과거 응시 가능성 여부를 논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연구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에 직접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으면 보조적인 자료라도 동원하여서 그 실상을 추적해 보야햐 한다고 생각한다.

3) 공상관료의 대우는 어떠하였는가? 공상의 관직 제수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이를 위해서 실제로 제한하는 정책들을 시행하였으며, 공상의 과거 응시도 제한하였지만, 공상 관료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이는 천예들이 관직에 진출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이유로 국가의 운영과 관리에 현실적으로 공상의 손길이 필요하였고, 일정한 공을 세운 공상에게는 예외적으로 상직을 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관료로서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별도의 잡직계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잡직계의 설치 과정을 검토하면서 공상관료의 지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공상의 세전은 어떠하였는가? 공상의 신분을 논함에 있어서 공상의 세전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공상의 세전을 보여주는 자료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세전여부를 단정하기 힘들다. 다만 공상과 관직, 공상과 과거에 관련되는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상에 대한 차대가 공상 본인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공상의 자손을 포함하는 것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공상의 세전에 대한 단편적인 자료와 연결시키면서 공상의 세전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이상의 과제들을 검토하면서 공상의 신분적 지위를 밝히고자 하나, 아직 전면적인 검토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선 공상의 신분에 대한 일단이 구명되기를 기대한다.

2. 공상과 관직

공상과 관직의 관계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상에게 관직을 주어서 안 된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고려

에서도 공상이 관직에 임명되었고, 조선에서도 공상이 관직에 임명되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공상과 관직의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공상에게 관직을 줄 수 없다는 견해는 조선초기 태조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태조 7년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를 잘 보여준다.

> 官爵을 설치한 것은 조정을 높이고 天職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땅히 현명하고 유능하며 공평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아서 관작을 맡겨야 될 것인데, 고려 왕조의 말기에는 工商이나 賤隷가 顯官의 임명을 받게 되어 조정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전부터 내려오는 폐해가 고쳐지지 않아서 마침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공상이나 천예들이 만약 공로가 있으면 財貨로써 상을 주고, 관직에 임명하지 말아, 名器를 소중히 하고 조정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11]

공상에게는 관직을 주지 말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 공상에 관직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말기 이래로 당시까지의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고 시행 시기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관행을 폐지하여 고려 말 이래의 폐단을 해소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공상이 관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일상적인 절차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을 세우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공에 대한 논상으로 부득이 하게 공장에게 관직이 주어졌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공상에게 공로가 있더라도 상을 재화로서 주고 관직은 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상을 천예와 같이 묶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인과 천인사이에는 신분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간 연구의 중요한 성과인데, 공상을 양인에서 분리해서 천예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왜 공상에게 관직을 줄 수 없는 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단지 "현명하고 유능하며 공평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아서 관작을 맡겨야 될 것인데"라는 언급에서 볼 때 공상이 현명 유능 공평 정직하지 못하여 관직을 맡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명 유능 등의 재질은 개개인의 차가 있는 것인데, 공상 전체를 포괄적으로 거론하면서 재질을 논한 것은 공상의 생득적 기

11) 『태조실록』 권 15, 태조 7년 11월 계미.

질에 의해서 관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곳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정종대에 언급되는 "士는 農에서 나오고 工과 商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12] 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공상은 사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공상에게 관직을 줄 수 없다는 논리가 형성된다. 이러한 인식은 역시 농 공 상을 단순하게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농 공 상이 단순한 직업으로 본다면 단정적으로 공상이 역시 단순한 직업인 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상에게 관직을 줄 수 없다는 인식은 인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공상에 대한 다양한 차대로서 표현되었다. 한 사례로 세종 13년 명화적을 잡기 위한 논상의 규정에도 공상에게는 관직을 줄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의금부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이러한 원칙이 잘 나타난다.

> "강도들의 장물을 받아 감춘 자가 죄를 두려워하여 고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혹 들었거나 본 자도 對質하기를 꺼려서 역시 고발하지 아니하오니, 청하건대, 한성부로 하여금 五部와 성밑 10리에 두루 효유하여, 장물을 감추어 둔 자와 보고 들은 자로서 맨 먼저 고하면, 良人은 상으로 벼슬을 주고, 工商 賤隷는 상으로 면포 50필을 주고, 아울러 그 죄를 면해 주며, 그것을 보고 듣고 와서 고하는 자의 고한 바가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역시 論罪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13]

이 내용에서 공에 대한 보상으로 양인에게는 벼슬을 상으로 주고 공상에게는 면포를 상으로 주어 공상을 양인에서 나누어 처리하고, 오히려 공상을 천예와 하나로 묶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공상에게는 관직을 줄 수 없다는 원칙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공상에게 관직보다 재화로 포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예는 다른 곳에서도 보인다. 척석군을 모을 때에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되었다. 세종은 그 원년에 다음과 같이 척석군의 모군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돌팔매질하는 자들이 건장하고 날래어 쓸모가 있음직하므로, 태조 대왕 때에 隊

12) 『정종실록』 권 3, 정종 2년 1월 기축.
13) 『세종실록』 권 52, 세종 13년 4월 계축.

伍를 형성하게 하였는데, 근래에 폐지되었으니 지금 자진하여 대오를 만든다면, 工商賤隷에 대해서는 그 戶稅를 면제하고, 양가의 자제는 등용하겠다.[14]

이에 의하면 척석군을 모군하는 댓가로 공상천예에게는 호세를 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가의 자제에게는 관직을 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의 양가의 자제는 포괄적인 용어로 이해되나 척석군이라는 직역을 고려할 때, 여기서의 의미는 일반양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여기서도 공상을 양인에 넣지 않고 천예와 같이 묶어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상은 納粟補官에서도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는 세종 32년 양성지가 납속책을 논하는 데서 다음과 같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벼슬을 파는 법령이온데, 대개 벼슬을 파는 데는 工商 賤隷 외에 良人을 가려 함흥이나 평양 이북에 곡식을 바치는 자에게 西班 軍職을 주되, 종9품은 1백 석, 정9품은 2백 석으로 例를 삼아, 종5품은 9백 석, 정5품은 1천 석으로 하고, 원래 관직이 있는 자는 1백 석마다 한 資級을 더해 주되 모두 5품에 이르러 그치게 하고, 곡식을 內地에 바치는 자는 그 수량을 倍로 하게 하여, 만일 2백 석을 바치면 한 자급을 올려 주되 모두 녹봉은 주지 말고 뒤에 재주에 따라 쓰게 하며, 가문이 좋고 人望이 있는 자는 역시 顯官으로 등용할 것이되, 이는 곡식을 얻는 방법으로서 지극히 궁색하고 급할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15]

양성지는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양 함흥 이북 지방에 군자곡을 저정할 필요가 있는데, 공상과 천예를 제외한 양인에게는 납곡을 하면 그 댓가로 관직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공상은 양인과 구분되고 천예와 같은 부류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공상에게 상으로 관직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조정의 문제가 되었다. 주로 대간이 이를 문제로 삼았다. 그 한 사례로 최항등 사간원이 올린 다음의 상소를 들 수 있다.

大慈庵 津寬寺를 짓는 諸色 工匠으로서 上林園의 직을 받는 자와, 그 別監 구실

14) 『세종실록』 권 3, 세종 1년 4월 무자.
15) 『세종실록』 권 127, 세종 32년 1월 신묘.

의 화원의 무리로서 官爵을 받는 자가 매양 批目에 외람되게 많은 것을 봅니다. --- 만약 工匠 賤隷의 무리이라면 비록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米穀으로 상주는 것이 옳고 이들에게 布帛을 내려 주는 것도 또한 옳은데, 어찌 외람되게 관직을 주어서 士類의 名分과 섞이게 하겠습니까?[16]

이 내용은 대간들이 공장들과 화원들에게 관직을 상으로 준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 여기서도 여전히 공상에게는 미곡이나 포백 등 물건으로 상을 내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 공장에게 상으로 관직을 주는 것은 대간 탄핵의 대상이었다.

이상에서 공상은 양인에서 구분되어 천예와 같이 파악되고 있었고, 관직도 줄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 위에서 실제로 공상에게 관직을 주는 것은 제한되고 있었고, 특별한 사정으로 관직을 주는 경우에는 대간 탄핵의 대상되고 있었다. 이는 공상의 그 지위가 일반양인과는 다른 것임을 잘 보여준다.

3. 공상과 과거

1) 과거 응시의 규제

공상에게 관직을 주는 것이 이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공을 세우더라도 관직을 상으로 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것이었고, 납속으로 관직을 주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또한 상으로 관직을 주는 특별한 경우에도 대간 탄핵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과연 공상이 과거시험을 보는 것은 가능한 것이었을까? 그간의 연구에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양인의 중요한 특권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공상의 지위를 살피는데 과거 응시 여부에 대한 검토는 중요하다. 공상의 과거응시 여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시 조정에서 논의되었던 몇몇 논의를 종합하면서 공상의 과거 응시 여부를 논의해 보자.

과거 응시의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갑사의 취재와 관련해서 공상이

16) 『문종실록』 권 4, 문종 즉위년 10월 경자.

거론된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공상이 과거에 관련 사례가 적은 상황에서 이 논의에는 관료들의 공상에 대한 인식을 잘 나타나있어 공상과 과거응시의 문제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태종 10년 사헌부의 상소로 공상의 갑사 취재 문제를 거론한 기록이다.

> 지금 甲士를 취재할 때에 祖係를 묻지 않고 오직 弓矢와 膂力의 능함만을 취하여, 商工 賤隷도 관직을 받아 縉紳의 子弟와 더불어 어깨를 비겨 나란히 서게 되니, 진신의 자제들이 동류가 되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빌건대, 병조로 하여금 그 四祖를 상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保擧를 책임지게 하여 取才를 허락하소서.[17]

사헌부에서는 갑사의 취재에 공상천예가 응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응시 자격에 '祖系'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혈통에 의해서 공상은 천예와 같이 갑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상으로 갑사의 취재에 임하는 것을 방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헌부에서는 1) 四祖를 살피도록 하고 2) 보거를 통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의를 통해서 사헌부에서는 혈통의 관점에서 공상이 갑사에 응시하는 것조차도 문제를 삼고 있다는 점과 또한 공상의 갑사에 응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조를 살피거나 보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공상과 과거의 문제를 처음 거론한 것은 태종 17년에 사간원에서 제시한 다음의 기록이다.

> 우리 나라의 科擧法은 한갓 재주만 시험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族屬을 분변하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生員試 東堂鄕試에 나오는 자는 각기 그 거주하는 고을의 申明色이 그 족속을 상고하여 赴試할 자를 錄名하여 그 官長에게 올리면, 그 관장이 監司에게 올리고, 감사가 다시 고찰하여 시험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京中의 漢城試는 한성부와 京在所로 하여금 살펴 三員의 文字 및 戶口를 갖추게 하소서. 鄕試와 漢城試에 합격한 자 및 館試에 나오는 자는 成均正錄所에서 또한 윗항의 明文을 고찰한 뒤에 赴試하게 하소서. 신명색과 경재소는 工商 巫覡 雜色 賤口의 자손과 몸이 불효의 不道를 범한 자를 드러내되, 정록소에서 精察하지 못한 자는 憲司가 규찰하여 엄히 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임금이 보고 留中하였다.[18]

---

17) 『태종실록』 권 19, 태종 10년 4월 정사.
18) 『태종실록』 권 33, 태종 17년 2월 경진.

이 내용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부류와 이들의 과거 응시를 막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대상으로 '工商 巫覡 雜色 賤口의 자손'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공상은 과거의 응시 자격이 없었다.[19] 또한 이들의 과거 응시를 막기 위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규찰의 주체로 지방의 시험은 신명색을, 서울에서의 시험은 한성부와 경재소를 선정하고 있다. 규찰방법은 호구와 '三員의 文字'를 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호구를 통해서 四祖를 살피고,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이었다. 이와 같은 규제방법은 갑사취재에 대해 사헌부에서 제안한 것과 그 기본 방법이 같았다. 다만, 그 담당부서가 명시되였다는 점이 갑사취재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조정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태종실록』에서는 그 처리에 대하여 태종이 이 안건을 '留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 안의 최종 결정은 분명치 않다. 일단 단정적인 결론은 유보하다라도 이 논의를 통해서 관료들은 공상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사조의 확인과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등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후 공상의 과거 응시 문제를 논의한 기록은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만들어진 『경국대전』에 과거 응시 불가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범죄하여 영영 서용하지 않는 자, 장리의 자, 재가로 실행한 부녀의 자손, 서얼자손 등이 문과 생원 진사시에 赴試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20] 이 내용에는 공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공상이 과거를 볼 수 있었을까? 이 내용은 포괄적인 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연히 과거 응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賤口의 자손등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과거를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아니라 사족으로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거론한 제한적 규정으로 이해된다.[21] 또한 과거에 응시가 불가한 자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과거응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규정되어 운영되었을 것으

19) 여기의 잡색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태종 13년 호패의 실시에서 잡색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류가 아닌가 한다.
20) 『경국대전』「예전」 제과.
21) 이성무, 앞 책.

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언급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조문은 매우 불완전한 규정으로 생각된다.

이후 과거운영에 대해 추가 규정은 중종대에야 보인다. 이는 잘 알려진『대전후속록』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 擧子를 錄名할 때에 四祖에 모든 사람이 아는 顯官이 있지 않다면, 외방인은 保單字와 경재소에서 3명이 (이름을 적어서 올리고), 경중에 거하는 이는 보단자와 해당의 部의 관원 3명이 이름을 적어 올린 후에 부시를 허용한다.[22)]

이 내용은 과거 응시에 부적격인 자를 규제하는 규정으로『경국대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 규제 방법이 매우 낯익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즉 1)四祖를 살피는 것 2)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것 3) 경재소를 이용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이미 공상을 갑사나 생원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자고 제안하면서 언급되었던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경국대전』에 보이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이때에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보기보다는『경국대전』의 이면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관행이 이때에 조문화된 것으로 보고 싶다. 이미 규제의 대상이『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경국대전』에 규정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규제방법 역시 운영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면에서 운영되고 있던 이러한 조문이『대전후속록』에 실리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의문에 답해주는 것이 중종 33년 사헌부 상소 중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 科擧는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반드시 四祖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상고한 뒤에 응시를 허가하는 것은 그 族類를 변별하여 벼슬길을 맑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래에는 인심이 예스럽지 않아서 庶孼과 市井子孫, 賤隷의 소생이 다 安分하지 않고, 혹은 호적을 고치거나, 혹은 四祖에 거짓 職銜을 入籍하거나, 淫婦의 자식이 保員의 이름을 거짓으로 서명하여 외람되게 試場에 나아가 간혹 급제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거짓 서명한 자와 외람되이 입적시킨 것이 발각된 자는 상례대로 멀리 옛장부를 상고하여, 아울러 호적을 함부로 고친 것을 치죄하는 등의 일과 간

22)『대전후속록』「예전」 제과.

사한 행위를 방지하는 節目을 該曹에게 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소서.[23]

이 내용에 의하면 과거의 응시에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庶孼과 市井子孫, 賤隷의 소생'이 과거에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응시가 허용되어서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대로, 호적을 허위로 고치거나, 사조의 벼슬을 속이거나, 보증인의 이름을 위조하여 과거에 응시하고 있었다. 이 내용에서 분명한 것은 과거를 볼 수 없는 대상과 그에 대한 규제방법이 이미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규제의 대상은 서얼, 천예의 소생, 시정자손 등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의 시정자손은 지금까지 검토해온 문맥에서 볼 때 공상의 자손으로 파악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24]

규제하는 이유는 상세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安分'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수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기의 '분'은 문맥상 신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시정자손은 신분상 과거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방법으로 호적과 보증인에 의한 방법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가 조정에 제기된 것은 불법으로 규제를 이탈하는 사례가 노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헌부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예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예조에서 제안한 대책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사헌부에서는 예조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근래 과거법이 엄중하지 않아서 庶孼과 市井子孫, 賤隷와 淫婦의 소생이 戶籍을 追改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保員의 이름을 빌어서 함부로 試場에 들어가곤 하여서 명분이 크게 훼손되어 가니 누군들 개탄하지 않겠습니까. 전일 신들이 이뜻을 아뢰고 該曹로 하여금 防奸節目을 만들게 하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조의 공문을 보니 매우 소략할 뿐 아니라, 承傳에 기재된 뜻 또한 아울러 기입하지 않아서 매우 소략합니다. 전지를 받들어 推考하여 절목을 다시 만들게 하소서."[25]

---

23) 『중종실록』 권 88, 중종 33년 8월 계해.

24) 공당인을 市井人으로 표기하고 있는 자료도 산견된다 한 예로 『성종실록』 권 148, 성종 13년 11월 갑진조의 자료를 들 수 있다.

25) 『중종실록』 권 88, 중종 33년 8월 기사.

사헌부에서는 예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문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헌부의 지적에 중종도 동의하면서 예조에 더욱 보완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예조는 더욱 보완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생각되나 어떠한 규정을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 논의에 의해서 규정이 확정되어 이 규정이 『대전후속록』에 실린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대전후속록』에 실린 부분은 규제방법에 대한 것만을 기록하고 있다. 규제의 대상은 이미 당연한 것으로 합의되어 있었으므로 거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대전후속록』 이전부터 과거 금지 대상과 그 규제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상은 과거를 볼 수 없는 대상이었으며, 호적과 보증인을 통한 규제의 제도를 통해서 과거 응시를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과거 응시 규제의 시기

그렇다면 언제부터 공상에 대한 과거 응시 규제가 시행되었을까?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자료는 거의 없으므로 중종대부터 역으로 거슬러 가면서 유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 시기를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먼저 주목되는 자료는 성종 16년 대사간 한언등이 유자광의 아들에게 과거를 허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올린 箚子의 다음과 같이 언급이다.

> 科擧의 법은 오래되었으며, 국가에서 祖宗 때부터 이 법을 첫째로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초 이름을 기록할 때에 四館이 모여 의논해서, 그 四祖를 상고하고 또 내외 족친의 보증을 상고하며 사조 안에 만일 현달한 벼슬이 없으면 또한 本貫을 京在所에 물어서 질정하여 그 중에 만일 작은 瑕疵라도 있으면 내치고 기록하지 않게 하였으니, 과거의 법이 중함이 이러합니다. 더구나 孽産의 자나 노예의 자손이겠습니까? 지금 유자광 최적은 얼산이고 조득림은 노예입니다. 비록 한때의 勳勞로 고관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서얼과 노예의 자손이 과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大典』에 실려 있는데, 어찌 한두 신하의 연고로 인하여 조종 만세의 법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내려진 명을 거두소서.[26]

26) 『성종실록』 권 179, 성종 16년 5월 무인.

사간원에서는 유자광과 조득림의 아들이 서얼과 노예의 자손이므로 과거 응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얼과 노예의 자손이 과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大典』에 실려 있는데”라고 언급한 부분은 주목이 된다. 여기의 대전은 시기상으로 볼 때『경국대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경국대전』에는 이러한 규정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은 분명히 오류인데, 문제는 이 논의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여러차례 거듭 언급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고 있고, 이 내용을 기록한 사관도 별다른 언급없이『성종실록』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27] 이는 이미『경국대전』에 기록된 규제대상과 별도로 합의되고 있는 규제의 대상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위 기록에 의하면 규제 방법 역시 시행되고 있었다. 규제방법은 ‘그 四祖를 상고하고’ ‘本貫을 京在所에 물어서’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사조를 살피고, 경재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대전후속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그 기본 내용이 같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성종 16년 이전에『경국대전』외에 과거에 대한 규정이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 관행 내에 규제 대상으로 공상 역시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이 옳다면, 이미 성종 16년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공상의 과거 응시를 금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설정되었을 시기를 좀더 추적해 볼 때 주목되는 것은 세종 14년의 서경 에 대한 논의이다. 주지하다시피 서경은 관직 임명 시에 행해지는 신원 확인의 절차였다. 과거의 급제 역시 핵심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진입로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서경에서 신분을 파악하는 기준은 과거의 응시자격의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서경에서 신원을 파악하는 기본입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서경의 기본 입장은 세종 14년 대사헌 신개의 상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7)『성종실록』권 179, 성종 16년 5월 경진.
『성종실록』권 180, 성종 16년 6월 기묘.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관원에게 교지를 내리시어 모두 署謝하게 하고, 臺閣에게 명백히 명하여 工商 賤隷 庶孼로서,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世係와 애매하고 자질구레한 긴절하지 않은 일은 의논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과 행실의 선악이 선비의 氣風에 관계되는 것만 바로 의논하여, 선한 사람은 먼저 署經하고, 악한 사람은 뒤에 서경하되, 만약 그 악이 중한 사람은 서경하지 아니하여 격려와 권장을 보일 것입니다.[28]

이 내용은 사헌부에서 전관원에 대하여 서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상소의 일부이다. 당시 서경은 5품 이하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대간들은 서경을 전관원에 확대하여서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경의 강도를 심하게 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대간이 서경에 임하는 기준은 '世係'와 '氣風'이었다. 여기서 관심을 모우는 것은 世係의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대간은 '공상 천예 서얼로서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사람' 만을 문제 삼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상은 천예 서얼과 함께 서경을 통과할 수 없는 계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경의 조건이 이러하였다면, 당연히 과거의 응시조건도 이와 같았으리라 추정된다. 오히려 서경의 범위는 핵심관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핵심관원이 되는 과거의 응시조건이 더욱 까다로웠을 것으로 추정된다.[29]

---

28) 『세종실록』 권 57, 세종 14년 8월 무자.

29) 그러면 이러한 서경의 원칙이 확립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공상과 관련하여서 서경의 기준이 제시된 가장 빠른 기록은 정종 2년의 대간이 언급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士는 農에서 나오고 工과 商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관교의 법이 한번 행하여지니, 工商 賤隷도 오히려 冒濫하게 仕進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인습하여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조정이 혼잡하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관교의 법을 고쳐 특별히 臺省으로 하여금 1품 이하의 告身을 署出하게 하여, 백관을 바르게 하소서.(『정종실록』 권 3, 정종 2년 1월 기축.)

이 역시 5품 이하로 되어 있는 서경의 범위를 전 관원으로 넓혀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서경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서경의 범위를 좁히면 공상 천예가 고위관직에 오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세종 14년의 서경에 관한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다소 차이가 있다면, 공상을 서경의 대상으로 당연하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경에서 공상을 걸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상을 가려야 하는 이유를 "士는 農에서 나오고 工과 商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아직 공상을 서경으로 걸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설명이 필요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은 추정이 옳다면, 과거금지의 대상과 그 규제의 방식은 세종 14년 이전까지 소급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주목되는 것이 이미 앞에서 살핀 바 있는 태종 17년 공상의 과거금지를 요청한 자료이다. 이미 태종 17년의 논의에서 사간원은 과거규제 대상으로 공상등을 지적하였으며, 과거 응시를 막는 규제방안으로 사조의 확인과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30] 앞에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공상의 과거 규제의 자료로 단정하지 못한 것은 사간원의 제안이 수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에는 태종이 이 건의에 대하여 '留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留中'의 의미는 일단 가부간의 결론은 보류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앞의 검토에서 이 자료를 공상의 과거 응시를 금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보지 못하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 시기를 따라 내려가면서 검토를 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시기를 세종 14년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공상의 과거 문제를 논한 유일한 자료인 이 논의를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태종 17년 이후 세종 14년까지 사이에 별다른 논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종 14년에는 공상의 과거응시 금지 조치가 확인된다면, 태종 17년의 '留中'한 조치를 부결로 보기 어렵다. 일단 조정에서 부결된 사안이 별다른 조정의 논의 없이 갑자기 그 결정이 뒤집힌 것으로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관원들이 자연스럽게 동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별다른 격론이 없었고, 실록에도 별다른 이견 없이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당시의 유중을 이렇게 해석해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시 이 문제와 같이 건의되었던 안건들의 처리과정이다. 태종 17년 사간원에서 공상의 과거응시 금지 안건과 동시에 올린 안건은 2건이 더 있었다. '科田의 陳告受田'의 안건과 '妻妾의 분변'의 안건이다. 당시 이 안건들은 공상의 안건과 함께 유중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 중에 한 안건인 '科田'의 건은 뒤의 자료에 의하면, 건의된 조항 그대로 건의된 시기에 바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31] 그러므로 당시 실록에 기록된 유중이라는

30) 『태종실록』 권 33, 태종 17년 2월 경진.
31) 『태종실록』 권 33, 태종 17년 3월 정미조에 의하면 호조에서 分田의 법으로 啓

것이 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할 때에 태종 17년 공상의 과거 응시를 금하는 안건도 일시적으로 유중되었으나 바로 풀리어 조정에서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공상의 과거 응시 금지' 결정은 태종 17년에 시행되었다고 생각한다.

4. 공상 관료의 차대

1) 유품직 공상관료의 차대

공상에게 관직을 주는 것이 이념적으로 부정되었고, 공상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길도 봉쇄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공상은 관직에 진출하고 있었다. 공상에게 관직이 주어지는 것은 공상이 국역에 동원되어서 이룬 성과와 관련되는 것이었다. 공상이 두드러지게 공을 세운 경우에는 비유품직뿐 아니라 유품직에도 임명되었다. 공상의 관직진출 특히 유품직의 진출은 조정의 중요한 논란거리였고, 대간들은 이를 저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진출을 막을 수 없을 때에는 이들에게 관료로서 주는 특권을 제한함으로써 차대를 가하려 하였다.

이들에 대한 차대는 이들에게 부여하는 관직체계를 달리하여, 관료로서 가지는 특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두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그 과정을 유품직 공상관료에 대한 차대와 비유품직 공상관료에 대한 차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먼저 조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유품직 공상관료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는 세종대에부터 나타났다.

가장 먼저 공상관료에 대한 차대가 부각된 것은 '啓聞治罪'의 특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계문치죄는 관료가 죄를 지은 경우에 재판관이 독단적으로 형량을 결정하지 않고 왕에게 물어서 판결하는 제도였다. 이는 관료를

聞을 올렸는데, "永樂 15년 2월 일의 受敎에, '그 給田한 정상을 보아 그 陳告한 선후로써 折給하라.' 하였으므로, 앞을 다투어 진고하나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여 士風이 不美하니, 금후로는 한결같이 진고함을 금단하소서."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영락 15년 2월은 앞의 사헌부에서 안건을 올린 시기로, 이때에 유중으로 처분되었던 안건이 실제로는 수용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관료의 재판상 특권이었다. 문무관에게 계문치죄의 권한을 부여는 세종 5년 세종의 다음과 같은 명에 의해서 되었다.

> 6품 이상, 東班 參外와 蔭職이 있는 자손 등의 笞罪는 敎旨를 받들어서 의금부에 내리어 시행하되, 이를 恒式으로 할 것이다.

세종이 사헌부 형조 의금부에 명한 것으로, 여기서 교지를 받들어서 처리한다는 것은 계문치죄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32] 이러한 문무관에 대한 계문치제의 부여에 공상관료들은 빠져 있었다. 이는 세종 5년 사헌부에서 계한 다음의 자료로 확인된다.

> "문무관과 3품이상의 蔭職子孫들이 十惡, 奸盜, 非法殺人, 법을 굽히고 장물을 받은 것, 私情을 쓴 것 이외에 해당하는 태형과 장형은 금년 정월 16일의 수교에 의거하여 모두 의금부로 옮겨 보내어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工商과 賤隷들은 비록 參上이라도 또한 전례에 의하여 태죄와 장죄는 바로 단죄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33]

여기의 '정월 16일의 수교'는 앞에서 인용한 문무관의 계문치죄를 명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본 내용은 문무관의 계문치죄의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공상관료는 천예관료와 더불어 계문치죄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때의 논의에서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계문치죄의 부여는 공상과 천예관료 외에 常人官僚에 대해서도 부여되지 않았다. 이는 세종 12년에 이르러서야 형조판서 김자지가 "벼슬이 있는 자는 비록 본계상인에 속한 자라도 취지논결하라"는 전교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어서[34] 상인관료의 대우는 별도로 처리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므로 계문치죄의 논의에서 조정에서는 관료들을 士族 출신의 관료, 常人 출신의 관료, 工商 賤隷 출신의 관료 등의 세부류로 나누어 파악하여 각각 다른 대우를 하고 있었다. 사족출신에게는 참하관에게까지 계문치죄가 허용되

32) 『세종실록』 권 19, 세종 5년 1월 기해.
33) 『세종실록』 권 21, 세종 5년 7월 신묘.
34) 『세종실록』 권 48 세종 12년 4월 계미.

었으나,[35] 공상천예의 출신의 경우에는 참상관에게까지도 계문치죄가 허용되지 않았다. 常人출신의 관료에게는 세종 12년까지 불분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세종 12년 경에 이르면 상인출신의 관료에게도 계문치죄가 허용되었고,[36] 이러한 계문치죄 확대 속에서 공상 천예 관료들에게도 계문치죄를 허용할 것인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미 앞에서 살핀 대로 공상은 常人의 범주에서 논의되지 않고 賤隷와 묶어서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상인에게 계문치죄가 허용되면서 공상에게도 확대 허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논의된 것이다. 공상관료는 常人 관료와 동일하게 문무산계를 받고 있었고, 관직도 유품직을 받고 있었으므로 관계나 관직 상으로 볼 때에 이러한 논의의 가능성도 있었다. 세종 12년 형조판서 김자지가 "모든 工商 賤隷로서 벼슬을 받은 자가 죄를 범하여 論決할 때를 당하면, '벼슬 있는 자는 비록 本系常人에 속한 자라도 取旨論決하라.'는 전교를 인용하여 즉시 죄를 받지 않게 된다."라는 지적을 통해서 공상관료의 계문치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상과 천예 관료에 대한 계문치죄 부여의 문제가 제기되어 조정의 논란이 있자, 세종은 다음과 같이 본계상인과 공상의 차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本系常人이라고 일컫는 것은 공상 천예를 말함이 아니다. 비록 世族은 아닐지라도 낮은 벼슬에 있는 西班 8품, 東班 9품 이상의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만약 司謁 司鑰 舞隊 따위는 비록 직은 있더라도 流品의 例에 들지 아니한다. 무릇 문무관의 범죄한 자들에게 取旨하여 贖罪하게 한 것은 士君子를 우대하자는 까닭이니, 비록 세족이 아니라도 공상 천예가 아니면 그 벼슬이 있음을 인하여 역시 우대함이 가하다.[37]

이 내용에 의하면 세종은 본계상인을 '世族은 아닐지라도 낮은 벼슬에 있는 서반 8품 동반 9품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공상천예는 여기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常人이라는 용어 속에 공상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상관료에게는 계문치죄의

35) 『세종실록』 권 49 세종 12년 9월 을사.
36) 『세종실록』 권 48 세종 12년 4월 계미.
37) 상동조.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세종의 명료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었다. 즉 세종이 '사알 사약 무대' 등 비유품관의 관직명까지 거론하면서 본계상인이 비유품관이 아니라 유품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계상인이 유품관인 경우를 강조한 것인데, 이러한 세종의 언급은 유품관인 공상에게는 계문치죄할 수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일단 이 논의에서의 결론은 공상 관료는 계문치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제기되었다. 찬성 허조는 "지금은 참외관과 蔭官의 자제들까지도 반드시 모두 啓達하여 그 죄를 논단하기 때문에, 文武의 士族 이외에 工商 賤隷의 무리도 반드시 계달해 죄를 논단하고 있다."[38]라고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미 세종에 의해서 분명하게 결정된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같이 세종의 언급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논란이 되면서 세종의 의도가 분명하게 노출되었는데, 세종은 "工商賤隷 雜職者는 士類와 대열을 같이 하지 못함은 물론이나, 만약 동서반의 직위에 참예한 자는 그 직임이 구별이 없는 이상 대우에 있어 다를 수 있겠는가."라고 계문치죄의 문제는 문무관 즉 유품관 여하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즉 같은 유품직은 공상이라도 다르게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 세종의 입장이었다. 세종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자, 계문치죄를 통해서 공상관료를 차대하려던 논의는 지속되기 어려웠다.

이에 관료들은 공상관료를 차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였다. 관료들은 계문치죄에 국한하지 않고 논의의 폭을 확대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기하였다. 새로운 제안을 세종 12년 정초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중국의 관제에는 각품마다 모두 雜職이 있어 유품에 참예하지 못하오나, 우리나라의 관제는 雜類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공상 천예 조례 소유 나장 장수의 무리일지라도 직임만 얻을 것 같으면 모두 조관 반열에 참예하고 있으니 심히 미편한 일입니다. 바라건대 서반 관직을 줄이고 따로 잡직을 설정하시어 문무관의 지위를 높이도록 하옵소서.[39]

38) 『세종실록』 권 49 세종 12년 9월 을사.
39) 상동조.

대신들은 공상관료를 차대하려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세종이 반대의 의사를 표현한 계문체죄의 건을 계속 주장하지 않고, 우회해서 '朝班 參與'의 건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반 참여는 관료가 조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조회는 관료가 왕을 알현하는 정기적인 예식으로 이에 참여는 일정한 자격이 요청되었고, 참여자격이 있는가 여부는 관료를 분류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였다. 관료들은 조반 참여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공상관료들에게 잡직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상관료를 차대하는 이유를 찬성 허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지금은 참외관과 蔭官의 자제들까지도 반드시 모두 啓達하여 그 죄를 논단하기 때문에, 문무의 사족 이외에 工商 賤隷의 무리도 반드시 계달해 죄를 논단하고 있어, 아마도 장래에는 사류와의 혼잡을 일으키어 良賤의 등위가 없을 것입니다.[40]

이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관료를 사족와 공상천예로 그 출신을 나누고, 그 차이를 '양천의 등위'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상은 천예와 별다른 차이 없이 하나로 묶어서 '천'에 분류되고 있다. 이미 공상이 常人에 속하지 못였다는 점은 앞의 논의에서 분명해 졌는데, 이 자료를 통해 거듭 확인된다. 물론 여기서 '천'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천신분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같은 유품직을 가진 관료를 대상으로 논하는 것인만큼 기능적인 면보다는 생득적인 지위를 논하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공상을 천인과 같이 묶어서 지칭하였다는 것은 이미 이들의 생득적 지위가 양인과는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관료들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함께 그 대안으로 잡직계 설치를 제안하자, 세종은 공감을 표하였고 이를 연구하도록 명하였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공상천예를 유품직에서 나누자는 입장이 힘을 얻어갔다. 그러한 움직임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세종 24년 유품직 공상천예에게 사옹원에 직을 주는 조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병

40) 상동조.

조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 諸色工匠에게 일시에 공을 상주어 西班軍職에 임명하여 朝班에 섞여 있게 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 청하옵건대, 司甕에 四番을 합하여 司直 12인 내에서 4인을 혁파하고, 7품 司正 8인에 4인을 더 하고, 8품 副司正 8인에 또 8인을 더하고, 정9품 給事 12인에 8인을 가설하고, 종9품 副給事 12인에 또 12인을 더하여, 각기 그 本番의 司甕 등에서 천전하는 遞兒와 각 色掌 등의 체아는 이전의 都目의 수효대로 하고, 그 나머지 각품의 결원은 工匠과 雜技 등으로써 임시에 賞職하게 하소서.[41]

공장의 조반참여를 막기 위해서 이들을 사옹원의 관직에 임명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사옹원은 유외잡직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이미 유외잡직에게는 조반의 참여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공장에게 사옹원의 직을 부여한 것은 잡직계를 만들지 않고도 공장의 조반 참여를 못하게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 제안은 수용되었고, 이를 통해서 유품직을 가졌던 공상 천예는 갑자기 비유품직의 대우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조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옹원에 자리도 대폭 마련하였다.

공상 관료에게 사옹원의 직을 주면서, 조반의 참여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으나, 이 조치는 잡직계의 신설을 제안하였던 근본적인 안과는 아직 거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공상의 지위 문제는 좀더 논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이 비유품관이 되었으므로 이후의 변화는 비유품관 내에서 공상관원의 지위의 변화와 같이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비유품직 공상관료의 차대

공상관료에게 사옹원직을 주게 되면서 공상관료는 비유품직에 편입되었다. 유념할 것은 유품직 공상이 비유품직 내에서 배치되기 전에도 비유품직에는 공상관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비유품직 내에 공상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은 세종 16년 예조에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

41) 『세종실록』 권 98, 세종 24년 11월 계미.

"慣習都監의 管絃盲人은 재주를 시험하여 직책을 받도록 이미 일찍이 立法되어 있으나, 그 중에 賤口에 관계된 자는 재주를 시험하여 직책을 받지 못하니, 諸色匠人의 賤口受職의 예에 의하여, 流品 이외의 雜職에 재주를 시험하여 서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42]

이는 관현맹인의 취재를 논하는 내용인데, 이에 의하면 이미 공상이 비유품직에 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상의 비유품직 제수는 다음의 세종 18년의 논의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된다.

그대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판수이면서도 관직을 받은 것은 지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로부터 있었다. 또 사옹원의 관직은 공상 천예들도 모두 받게 되었는데, 아마 모두가 그 사무를 반드시 맡지는 못할 것이다.[43]

이 내용은 세종이 관직제수과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사옹원에 이미 공상 천예가 배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품관내에 있던 공상관료들이 사옹원에 배치되면서, 기존의 비유품직 내에 있던 공상관료들과 통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비유품직 내에서 공상관료는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까? 먼저 유념할 것은 당시 비유품직은 유품직 내에서 공상을 분리하려는 논의의 이면에서 '유외잡직'으로 호칭되어 유품직과의 차별성이 커지면서 그 일반적인 지위가 하락하고 있었다.[44] 이러한 비유품직 내에서 공상이 점하는 위치는 어떠하였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상관료의 입지는 비유품직 내에서도 위축되고 있었다. 비유품직 내에는 양인, 공상인, 천인 등의 관료들이 망라되고 있었는데, 양인 관료의 경우에 그 지위가 상승하였고, 상대적으로 공상인과 천인 관료들의 지위는 더욱 위축되었다. 이러한 동향은 유품직 공상이 사옹원에 배치되기 이전부터 나타났다. 이는 세종 15년에 예조에서 유외잡직 양인관료들에게는 '계문치죄' 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해서 파악된다.

---

42) 『세종실록』 권 66, 세종 16년 11월 무술.
43) 『세종실록』 권 75, 세종 18년 10월 정묘.
44) 최이돈, 2005, 「조선초기 잡직의 형성과 그 변화」, 『역사와 현실』 58.

도화원 상의원 사옹방 아악서 충호위 등은 비록 잡직일지라도 본래 천인이 아니므로, 그 참상은 성중관의 예에 의해 계문하여 논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45]

잡직 관원들은 유품관들과는 달리 '계문치최'하는 특권을 가지지 못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서 양인인 경우는 참상관에 한하여 계문하여 치죄하게 되었다. 유품관은 참외관까지 계문치죄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참상관에 국한한 조치는 제한적인 우대였지만 비유품직 내에서 양인은 일정한 우대를 받고 있었다.

잡직 내에 양인을 우대하려는 움직임은 유품직 공상이 사옹원에 배치된 후에 보다 확대되어서 세종 26년에는 비유품직의 참외관까지도 계문치죄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세종이 비유품직 양인관료의 참외관까지 계문치죄를 확대하라고 다음과 같이 명하고 있다.

도화원 상의원 사옹 아악 충호위는 그 벼슬들이 비록 유품 밖의 것이기는 하나, 천인은 아니다. 참상은 성중관의 예에 따라 啓聞한 뒤에 시행하라는 것은 이미 일찍이 입법되었다. 지금 散官의 제수를 받은 사람의 冠帶 承蔭 坐罪 등 여러 가지 일은 문무관 실직을 받은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산관의 제도는 매우 중대한 것이다. 위의 상의원 등의 각인도 또한 서반 산관의 직을 받은 것이니, 지금부터는 만약 범법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다만 참상만이 아니고 참외에 이르기까지, 문무관의 예에 따라 임금의 뜻을 물어 시행하는 것을 영구한 常用의 법으로 하라.[46]

이에 의하면 유외잡직도 산계는 유품관과 동일하게 문무산계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다면 이들을 유품관과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인인 유외잡직은 참외관까지 계문후 치죄하는 우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서 공상관인들은 양인관료에서 분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를 한 며칠 뒤에 공상관료들은 사옹원에서 상림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였다. 세종 26년 의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제안하였다.

---

45) 『세종실록』 권 59, 세종 15년 2월 무술.
46) 『세조실록』 권 105, 세종 26년 7월 임신.

우리 나라에서는 양천의 구별이 매우 엄격한데, 前項의 공장과 잡기를 가진 자는 대개가 천민으로서 사옹원 諸員 등 都目 去官의 제도를 적용하는 관직을 주어 양천이 혼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사옹 사번의 각품 내의 사직 4인, 부사직 4인, 사정 4인, 부사정 4인, 급사 8인, 부급사 8인은 그대로 계속 사옹 제원의 벼슬을 주며, 사직 4인, 부사직 4인, 사정 8인, 부사정 12인, 급사 12인. 부급사 16인을 제외하고는 상림원에 예속시켜서 工匠, 雜技, 賤口 등에게 제수하여 양천을 구별하게 하십시오.[47]

이는 공상관료를 다시 상림원으로 옮기자는 제안이다. 상림원은 사옹원과는 달리 이전부터 천인들이 임명되는 부서로 파악되고 있어 유외잡직 내에서도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다.[48] 이 조치는 당시 관료들이 공상관료를 사옹원직에 임명을 하여 비유품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 아직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잡직내의 양인들을 우대하는 조치가 추진되면서 공상관료들을 확실히 구분하여 차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상림원에 예속시켜서 工匠, 雜技, 賤口 등에게 제수하여 양천을 구별하게 하십시오."라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 의하면 역시 공상을 잡기 천구와 함께 良賤 중에서 賤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공상은 천구와 별도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분명하게 천인공장만이 아닌 양인공장까지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49] 공상을 천구와 같이 '賤'으로 분류된 것은 관직체계의 관점에서는 관료들이 공상과 천예를 별다른 차이 없이 인식하고 있음을 거듭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림원으로 옮기는 조치는 공상관료를 비유품직 관료 내에서도 차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여전히 문무산계를 부여하고 관직명도 유품직과 같은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서 아직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공상관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였는데, 그 핵심은 별도의 관직체계를

47) 『세종실록』 권 105, 세종 26년 윤7월 임오.

48) 流外雜職 가운데에서 상림원에는 內奴를 붙이고, 전악서에는 妓孫 및 公賤으로서 채워 정하되, 만일 법을 범한 바가 있으면 비록 參上일지라도 형법에 의하여 바로 처벌을 행하고, 도화원 상의원 사옹방 아악서 충호위 등은 비록 잡직일지라도 본래 천인이 아니므로, 그 참상은 성중관의 예에 의해 계문하여 논죄하게 하옵소서(『세종실록』 권 59, 세종 15년 2월 무술).

49) '공장과 잡기를 가진 자는 대개가 천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한적이기는 하였다.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위의 상소에 연하여 의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 상림원의 직품 중에 산관도 역시 무반인 산관을 제수하기 때문에 다른 문무 實職의 품관들과 다름이 없어서 또한 온당하지 아니하오니, 정5품 奉事校尉와 奉務校尉, 종5품 承進校尉와 承供校尉, 정6품 修任校尉와 修職校尉, 종6품 愼功校尉와 愼課校尉, 정7품 服效副尉, 종7품 服勤副尉, 정8품 典功副尉, 종8품 尙功副尉, 정9품 給事, 종9품 副給事는 예전대로 資給 없이 임명하도록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50]

공상관료를 위해서 기존의 문무산계와는 다른 별도의 산직체계가 제안되었고, 조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51] 이 조치를 통해서 비로소 제도적으로 공상 관료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공상 관인이 잡직계를 받는 것은 양인 공상이나 천인 공상을 막론한 것었음을 위의 논의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이는 세종 27년 세종이 병조에 명령한 다음의 기록에서 다시 확인된다.

> 各司의 諸色匠人과 商賈에 이름을 둔 자는 비록 양인에 속하더라도 대장 대부를 제수하지 말고 모두 상림원의 職을 주라.[52]

각사 공상의 직을 맡는 양인에게 잡직계를 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이 새삼스럽게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유품관에 속하였던 공상천예는 사옹원으로 모아진 뒤에 다시 상림원에 통합되면서 잡직계를 받은 상태이므로, 여기의 '각사의 제색장인'라는 구절을 볼 때에 이 명령은 유외잡직에 배치되어 있던 공상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즉 비유품직 내에 흩어져 있던 공상관료들을 상림원으로 모우면서 취해진 조치로 이해된다. 이를 위해서 이미 상림원은 세종 26년 사옹원으로부터 많은 인원을 넘겨받았는데, 세종 27년에 다시 대폭 증원을 했다.[53] 상림원에 증액된 인원을 정리해보면 상당히 많

50) 『세종실록』 권 105, 세종 26년 윤7월 임오.
51) 유승원, 앞 책.
52) 『세종실록』 권 110, 세종 27년 11월 경진.
53) 『세종실록』 권 109, 세종 27년 7월 경인.

은 인원을 증원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54] 이는 유품직은 물론 다른 유외잡직에 임명되던 공상의 수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종 31년에는 잡직계를 받은 관원의 관직명도 유품직과는 다른 명칭을 쓰기에 이르렀다. 공상관료들은 상림원에 따로 수용되었고 산계도 이미 바뀌었으나, 관직명은 유품관들과 여전히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관료들의 논의를 통해서 세종 31년에 "司直은 管事로, 副司直은 副管事로, 司正은 典事로, 副司正은 副典事로" 고치기를 결정하였다.[55] 이로써 잡직계 설치이후 공상천예 출신의 관직자들을 구분하는 조치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공상 관원들이 잡직계로의 통합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문종대의 군기감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양인장인에게는 서반 군직을 주는 사례가 노출되기 때문이다.[56] 그러한 통일 되지 않은 동향은 유외잡직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균질적 과정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예로 아악서와 같은 곳은 부서 자체에 별도의 산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잡직계가 만들어 진 이후인 세종 30년에 내부의 양인 관원과 천인 관원을 나누기 위하여 양인이 받을 수 있는 산계를 새롭게 마련하였다.[57] 이후 아악서는 성종 2년에 이르러서야 다른 유외잡직과 통일된 산계를 사용하게 되었다.[58] 이러한 사정이었으므로 잡직체계는 잡직계를 만든 이후에도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비통일성은 서서히 해소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59]

그 결과 세조 6년에 이르면 상림원의 직으로 모아두었던 공상천예 관인들을 본래의 활동하는 부서로 소속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60] 이 조치는 잡직계 통일에 대한 자신감의 소산이었다고 생각된다.[61] 이 조치로 인원을 받는 부서

54) 최이돈, 앞 논문.
55) 『세종실록』 권 123, 세종 31년 1월 신묘.
56) 유승원, 앞 책 pp. 403-404.
『문종실록』 권 8, 문종 원년 6월 병술; 『문종실록』 권 9, 문종 원년 9월 무술.
57) 『세종실록』 권 119, 세종 30년 2월 신유.
58) 『성종실록』 권 11, 성종 2년 7월 계유.
59) 『경국대전』 「이전」 잡직. 이러한 현상은 잡직 부서의 최종적인 통일안이 되는 『경국대전』에까지 노출된다. 즉 위와 같은 비균질성의 결과로 장악원의 양인들은 예외적으로 문무산계를 받도록 규정되고 있다.
60) 『세조실록』 권 21, 세조 6년 8월 갑진.

들은 상의원, 군기감, 교서관, 공조, 선공감 등이 거론되었는데, 이 부서들은 상의원을 제외하고는 잡직부서로 파악되지 않았던 곳이다. 이후 이 부서들은 잡직이 배치되는 부서로 파악된다. 배치된 이들은 당연히 잡직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상의원에서 가지고 있던 별도의 관직명도 가지고 간 것으로 파악된다.[62] 이러한 조치는 이미 별도의 잡직계가 부여되었으므로 유품과 잡직이 섞이는 혼란이 없이 공상들이 해당부서에 소속하도록 하여 관리에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잡직계의 틀은 별다른 변화 없이 『경국대전』에 잡직조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국대전』에서도 포괄하고 있는 부서의 다양함과 각 부서의 역사적 성향의 차이로 인해서 다소의 예외는 존재하였다. 공상은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통일되어서 양천을 구분하지 않고 잡직계를 받았으나, 장악원 교서관 액정서의 양인은 예외적으로 문무산계를 주었다.[63] 이러한 잡직 내의 비통일성은 이후에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었다. 성종 8년 대사헌 김영유는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 流品이라 이르는 것은 바로 東班의 實職을 이름입니다. 이제 掌樂院 典校署 掖庭署의 雜職은 바로 工商賤隷의 무리가 겨우 贖을 받치어 良人이 되면서, 곧 東班의 품계에 제수되었습니다. --- 工匠 안에 新良人은 東西班의 계자를 제수하지 못하게 하소서.[64]

이 내용에서 지적하는 것은 잡직 중에서 장악원 전교서 액정서의 양인이 『경국대전』의 규정에 입각하여 문무산계를 부여받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잡직 내의 비통일성은 잡직 형성과정의 다기함에서 오는 역사적 산물이었으므로 조정이 간단치 않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관료들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61) 물론 이미 세조 3년에 90명을 감원하는 조치로 인해서 상림원이 공상관원을 모아두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감안해야 한다.

62) 각 부서에 배치된 관직명이 관사와 전사로 유품직과 다른 관직명으로 상림원에서 보유한 명칭을 그대로 나누어 주었다. 단지 상의원의 경우는 사직 사정 등의 칭호가 보여서 다소 특이하나 이부서 역시 전사 급사 등이 배치되고 있다.

63) 『경국대전』「이전」 잡직.

64) 『성종실록』 권 82, 성종 8년 7월 임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성종 13년에 다시 한번 조정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사간 김극검이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제기하였다.

> 시장 안 工商人으로 금령을 범한 자가 만약 품계가 文武職과 같으면 決杖을 못하고 다만 贖을 징수할 뿐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市井小人은 비록 職級이 있더라도 문무관의 예로 논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65]

이는 공상으로 계문치죄의 해택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잡직계를 받는 이들은 계문치죄의 해택의 밖에 있었으므로 공상으로 문무산계를 받는 이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고, 이들은 구체적으로 같은 논의에 참여하였던 동지사 이승소가 "掌樂院 典校署 工匠의 職銜이 문무관과 같은 것은 未便하니"라고 지적한 것으로 그 대상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장악원 전교서 액정서의 공장이 문무산계를 받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성종은 "祖宗朝로부터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갑자기 고치기가 어렵고, 또 이들은 임금이 주는 벼슬을 받았는데 바로 죄를 주는 것은 적당치 못하다."고 반대하였다. 이후 이들에 대한 문제는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이미 성종대이후에는 기술직까지 잡직으로 파악되는 큰 흐름이 전개되면서, 잡직계의 지위는 더욱 위축되는 상황이 전개되어 공장의 잡직계 부여 문제는 쟁점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66]

5. 공상의 세전

이상의 검토를 종합할 때 공상은 관직에 임용되는 것이 규제되고 있었고, 임용되더라도 잡직계를 받아 천예와 같은 대우를 받았고, 과거의 응시도 금지되었다. 이에 마지막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규제가 공상 본인에 한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자손에게 까지 미치는 것이었을까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공상의 신분적 지위를 논하는 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공상의 세전적 규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극히 작은 상황에서, 이는

65) 『성종실록』 권 148, 성종 13년 11월 갑진.
66) 최이돈, 앞 논문.

세전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 관료들이 공상을 차대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 지를 검토하면서 논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관료들이 공상을 차대하는 이유가 직업적인 것인지 혈통적인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공상에 대한 차대의 이유가 혈통적인 것이라면 그 차대가 본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상의 자손에게 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상 신분의 세전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당시 관료들이 왜 공상을 차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를 우선 공상에게 관직을 줄 수 없는 이유에서부터 검토해 보자. 성종 19년 지평 박시형은 다음과 같이 공상이 관직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 옛적에 四民 가운데 士農은 조정에 벼슬을 하였으나 工商은 참여하지 못한 것은 業이 賤하기 때문이었습니다.[67]

박시형은 공상이 관직을 할 수 없는 이유를 '業'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업'의 의미는 오늘날의 직업을 연상하게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그 문맥을 유심히 보면 이는 오늘날의 직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만약 이를 단순히 직업의 관점으로 파악한다면 그 기준이 유능과 무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또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공상 전체 집단적인 범주를 들어서 평가하고 있고, 능력을 평하기 보다는 용어보다는 '천'하다라는 귀천적인 용어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공상을 사농과 비교해서 貴賤의 관계로 보는 관점으로, 신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미 관직에 나아간 공상을 차대하는 이유도 위와 비슷한 것이다. 세종 12년 허조는 공상천예를 별도로 관계를 만들어 분리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문무의 사족 이외에 工商 賤隷의 무리도 반드시 계달해 죄를 논단하고 있어, 아마도 장래에는 사류와의 혼잡을 일으키어 良賤의 等位가 없을 것입니다.[68]

67) 『성종실록』 권 19, 성종 3년 6월 기사.

이 내용에 의하면 공상천예를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로 '양천의 등위'를 거론하고 있다. 여기서 등위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당시의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등위'의 용례는 크게 둘로 볼 수 있다. 당상관과 당하관을 나누는 정도의 같은 신분내의 상위직과 하위직을 나누는 정도의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와[69] 귀천의 질서에 따라 신분적 존비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70] 나누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위직과 하위직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경우 천하다는 귀천의 표현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후자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는 앞에서 살핀 '業'의 관점에서 천하다고 한 지적보다 더욱 신분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부분은 공상과 천예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양천의 천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초기의 '양천'이라는 용어는 거의 예외 없이 양인과 천인을 같이 지칭하는 뜻을 가진 용어였고, 이는 그대로 법제적인 용어였다. 이러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천'에 공상과 천예를 같이 묶어 놓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공상을 양천 중에서 천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자료는 세종 26년에도 보인다. 공상을 차대하기 위하여 사옹원에 모아두었던 공상천예 관료들을 상림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때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사옹 사번의 각품 내의 사직 4인, 부사직 4인, 사정 4인, 부사정 4인, 급사 8인, 부급사 8인은 그대로 계속 사옹 제원의 벼슬을 주며, 사직 4인, 부사직 4인, 사정 8인, 부사정 12인, 급사 12인. 부급사 16인을 제외하고는 상림원에 예속시켜서 工匠, 雜技, 賤口 등에게 제수하여 良賤을 구별하게 하십시오.[71]

이 대목에서도 역시 공장을 잡기 천구와 함께 良賤 중에서 賤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상을 양천이라는 용어와 같이 언급한 이러한 용례는 주로 세종대

68) 『세종실록』 권 49, 세종 12년 9월 을사.
69) 『성종실록』 권 247, 성종 21년 11월 을유.
70) 『성종실록』 권 180, 성종 16년 6월 경진.
71) 『세종실록』 권 105, 세종 26년 7월 임오.

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공상의 지위와 관련해서 좀더 지속적인 검토가 요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72)]

위와 같이 몇가지 기록을 검토해 볼 때 공상이 '천'하다는 것은 직업적 능력의 관점에서 언급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특히 천인과 묶여서 같이 천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를 신분상 용어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신분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좀더 확실한 자료가 요청된다. 만약 자손까지를 같이 언급하는 자료가 있다면, 즉 공상의 자손까지 묶어서 차대하는 자료가 있다면 공상을 혈통상, 신분상 천한 것으로 파악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는 자연스럽게 공상차대의 범위가 어떠하였는가의 과제로 전환된다. 먼저 주목되는 자료는 署經에 대한 기록이다. 서경은 관료의 관직 임명에 요구되는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였으므로, 여기에는 그 검증 기준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서경의 기본 입장은 세종 14년 대사헌 신개 등의 상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관원에게 교지를 내리시어 모두 署謝하게 하고, 臺閣에게 명백히 명하여 工商 賤隷 庶孽로서,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世係와 애매하고 자질구레한 긴절하지 않은 일은 의논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과 행실의 선악이 선비의 氣風에 관계되는 것만 바로 의논하여, 선한 사람은 먼저 署經하고, 악한 사람은 뒤에 서경하되, 만약 그 악이 중한 사람은 서경하지 아니하여 격려와 권장을 보일 것입니다.[73)]

이 기록에 의하면 대간이 서경에 임하는 기준은 일차적으로는 '世係'였고, 그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차적인 기준은 '氣風'이었다. 즉 혈통과 인품을 기준으로 서경을 하였다. 여기서 관심을 모우는 것은 世係를 기준으로 서경하는

---

72) 세종대의 자료를 보면 명백하게 양인과 공상천예를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는 기록을 자주 대할 수 있다.
"양인은 상으로 벼슬을 주고, 공상 천예는 상으로 면포 50필을 주고"(『세종실록』 권 52, 세종 13년 4월 계축).
"벼슬을 파는 데는 공상 천예 외에 양인을 가려"(『세종실록』 권 127, 세종 32년 1월 신묘).

73) 『세종실록』 권 57, 세종 14년 8월 무자.

경우인데, 이에 의해서 제한되는 명백한 부류는 '공상 천예 서얼'이었다. 여기서 공상은 그 기준이 '세계'를 보는 것이었으므로 공상 본인이라기보다는 공상의 자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차대의 범위가 공상 본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혈통의 관점에서 공상의 자손은 천예의 자손과 같이 묶어서 서경을 통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때에 앞에서 살핀 공상을 천하다고 한 기록의 의미가 좀더 분명해진다. 즉 공상은 직업적인 의미가 아니라 생득적, 혈통적인 의미에서 천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공상에게 관직을 줄 수 없었고, 관직을 주는 경우에도 차대를 하는 것이 정당하였다.

공상의 자손이라는 조건이 관직의 임명과 서경에 치명적인 결격사유이었으므로 특정인을 공상의 자손이라고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것은 중요한 범죄가 될 수 있었다. 세종 13년 의금부에서 올린 다음의 기록은 그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박거비가 정보광을 불효하다고 거짓 지목하고, 또 보광의 世系를 알지 못하고 工商의 아들이라고 지목하여 예조에 牒報하였사오니, ---- 법률을 상고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니, 그를 파면하라고 명하였다.[74]

이에 의하면 박거비가 정보광을 모함하면서 공상의 아들이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나서 박거비가 관직에서 파면을 당하였다. 이러한 처벌은 공상의 아들이 라는 것이 매우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 이유가 되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사례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응시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에서 공상의 차대는 그 자손에게 미치고 있었다. 이는 처음으로 공상의 과거응시를 거론한 태종 17년에 사간원의 다음과 같은 제안에도 잘 나타난다.

> 우리 나라의 科擧法은 한갓 재주만 시험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族屬을 분변하니, --- 신명색과 경재소는 工商 巫覡 雜色 賤口 子孫과 몸이 불효의 不道를 범한 자를 드러내되, 정록소에서 精察하지 못한 자는 憲司가 규찰하여 엄히 법

74) 『세종실록』 권 53, 세종 13년 9월 갑술.

으로 다스리게 하소서.[75]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대상으로 '工商 巫覡 雜色 賤口 子孫'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 내용 중에서 '자손'이 수식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다소 애매하나, 이들이 과거를 볼 수 없는 이유를 과거가 '族屬을 분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여기의 자손은 工商 巫覡 雜色 賤口 모두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공상은 그 자손까지도 혈통의 문제 때문에 과거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응시자격에 자손까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흥미롭다. 당시 현실에서 공상 본인이 직역에 종사하면서 과거를 응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고, 오히려 조정의 논의에 대상은 공상으로서 부를 축적한 이들이 여유를 가지고 자손을 교육하여 과거에 응시시킨 경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조정의 논의에서는 이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과거에서 공상자손을 배제한 내용은 중종 33년의 사헌부의 상소 중에서 다시 확인된다.

> 科擧는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반드시 四祖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상고한 뒤에 응시를 허가하는 것은 그 '族類를 변별'하여 벼슬길을 맑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래에는 인심이 예스럽지 않아서 庶孼과 市井子孫, 賤隷의 소생이 다 安分하지 않고, 혹은 호적을 고치거나, 혹은 四祖에 거짓 職銜을 入籍하거나, 淫婦의 자식이 保員의 이름을 거짓으로 서명하여 외람되게 試場에 나아가 간혹 급제하는 자도 있습니다.[76]

여기서도 '族類'을 과거응시 자격을 변별하는 기준으로 명시한 것이나, 과거응시에 규제의 대상으로 '庶孼과 市井子孫, 賤隷의 소생'[77] 등과 같이 '자손', '소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앞에서 살핀 내용과 거의 같다. 그러므로

75) 『태종실록』 권 33, 태종 17년 2월 경진.
76) 『중종실록』 권 88, 중종 33년 8월 계해.
77) 며칠뒤에서는 『중종실록』 권 88, 중종 33년 8월 기사조에 '庶孼과 市井子孫, 賤隷와 淫婦의 소생'으로 확대되어서 언급된다.

이 자료에서도 공상의 자손은 과거응시 대상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에 공상은 본인은 물론 자손까지 관직에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고, 관직을 가지더라도 차대를 받고 있었으며, 과거의 응시도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이 혈통적으로 천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검토의 결과를 볼 때 공상이 일반양인과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세전하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상의 세전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다. 『대전후속록』 공전 공장조에 기록된 "사옹원 사기장 子枝는 다른 역에 차정하지 말고 世傳其業하라"는 기록이 거의 유일하다. 이는 사기장의 세전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공상의 세전을 짐작케 해주는 가장 확실한 기록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그 대상이 사옹원의 사기장에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것은 사기장 외에는 공상에게는 세전 규정이 없음을 방증하는 자료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자료를 역으로 이용할 때에는 세심한 주위가 요한다. 『조선왕조실록』의 자료는 의외로 세심한 구석이 있어서 양인에게 천역을 담당시킬 경우에는 사환권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만약 이 기록이 공상의 세습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별도의 논의가 실록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와 관련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왕조실록』은 사옹원의 사기장이 『대전후속록』에 특기되게 된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종 25년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 정원에 전교하였다. "사옹원에서는 해마다 當領水軍을 달라고 계청하는가 하면 병조에서는 그때마다 군인이 없다고 아뢴다. 예전에는 사기장이 실제로 많았었으나 지금은 반이나 도망하였다. 당령수군을 많이 배정할 수는 없으니 50여 명을 恒式으로 삼아 定給할 것도 아울러 의논하라."[78]

이 기록에 의하면 논의 당시 사옹원의 사기장이 많이 도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고, 이에 50여명의 인원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논의되었음

78) 『중종실록』 권 67, 중종 25년 2월 을축.

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의 하나가 추측건데 사옹원의 사기장으로 있던 이들의 자손에게 본역을 계속하도록 하는 『대전후속록』의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위의 『대전후속록』의 기록은 사옹원의 사기장을 충당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생각할 문제이지, 전혀 없던 공상 세전에 관한 규정을 사옹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위의 『대전후속록』의 기록은 공상의 신분이 세전이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앞에서 검토한 관직과 과거에서 공상이 혈통적인 차대를 받고 있는 당시 현실과 잘 부합된다. 그러므로 공상은 그 신분이 세전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초기의 공상인의 신분적 지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검토하였다.

1) 공상은 관직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었다.

많은 자료가 공상의 관직임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사와 농은 관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으나, 공상과 천인은 관직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 조선초기부터 확실하였다. 이러한 입장의 뒤에는 사와 농은 귀하고 공상은 천하다는 생각이 깔려있었다. 즉 공상은 일반양인과는 다르다는 입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원칙론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있었다. 군공을 세우거나 명화적을 잡는 등의 경우에 양인은 관직을 주고 있으나, 공상은 미포 등을 상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납속으로 관직을 주는 경우도 공상을 그 대상에 제외하고 양인에 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식 위에서 실제로 공상에게 관직을 주는 것은 대단히 제한되고 있었고, 특별히 관직을 주는 경우에는 대간의 탄핵의 대상되고 있었다.

2) 공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둘로 나누어서 먼저 공상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는가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공상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결정된 시기를 검토하였다. 먼저 공상의 과거 응시가 불가하였다는 가를 검토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조선초기의 자료는 물론 『경국대전』에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중종대의 자료에 이르러서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상의 과거 응시가 불가하다는 정책이 확정된 시기를 자료가 확인된 중종대부터 역으로 추적해 올라오면서 검토하였다. 과거에 관한 단편적인 자료와 인사나 서경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해보면서 그 시기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태종대 이미 공상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를 규제하는 방법이 사조의 확인과 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공상관료는 천예와 같이 잡직계를 받는 차대를 받았다.

공상의 관직 제수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이를 실제로 제한하는 정책들을 시행하였으며, 공상의 과거 응시도 금하였지만, 공상 관료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이는 국가의 운영과 관리에 현실적으로 공상의 손길이 필요하였고, 일정한 공을 세운 이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상직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형편은 천예들이 관직을 받게 되는 것과 그 경위가 거의 같은 것이었다.

처음에 문제로 제기된 것은 공상이 유품직을 받게 되는 경우였다. 공상들을 비유품직에 임명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 용인하고 있었던 반면 유품직을 임명하는 것은 조정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유품직 공상관료들에게 관료로서의 대우를 차대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즉 계문치죄나 조반 참여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공상들이 문무산계를 가지고 있었고, 유품직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차대하는 것은 절차상 쉽지가 않았다. 이에 나타난 제안이 이러한 차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직체계를 만들어 공상에 부여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별도의 관직체계를 만드는 것은 몇단계의 논의를 거친 것이었다. 우선 유품직 공상을 비유품직 부서인 사옹원으로 옮기는 조치가 취해졌다. 즉 공상들을 유품직에서 비유품직으로 관직을 전환시키는 조치였다. 또한 비유품직 내에서도 공상은 일반양인과 구별되어서 차대를 받으면서 천인들이 거하는 관서인 상림원으로 다시 옮기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에 공상관료에게 별도의 산계인 잡직계가 주어졌고, 별도의 직사호도 부여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잡직계를 받은 공상관료는 관료로서 특권은 상실

하고 직역만 남아 있어 관료로서의 지위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특히 공상은 이러한 일련의 논의과정에서 일반양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천예과 같이 묶여서 논의되었고, 결국 천예와 같이 잡직계를 받게 되었다. 이는 당시 지배계층이 인식하고 있는 공상의 신분적 범주가 일반 양인과는 다르고, 천인과는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4) 공상은 세전되었다.

공상의 신분을 논함에 있어서 공상의 세전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공상의 세전을 보여주는 자료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연관되는 자료를 통해서 공상의 세전여하를 검토하였다. 먼저 당시의 관료들이 공상을 차대하는 이유가 직업적 기능 때문인지, 혈통적 신분 때문이었는지의 검토하였고, 이어서 이러한 차대가 공상 본인에 그치는 것인지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많은 자료를 통해서 공상은 사농에 비하여 천한 것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서 공상의 차대가 단순히 직업적인 유능 무능의 차원이 아니라 혈통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차대가 본인에 한한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경규정의 '世係'나 과거규정의 '族屬' 등의 언급은 이를 분명하게 해준다. 이와 같은 검토의 결과는 공상에 대한 유일한 세전규정인 『대전후속록』의 공장세전 사례와 잘 조응하고 있다. 따라서 공상은 일반양인과는 신분적으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세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 :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주제어 : 工商, 雜職, 身分

투고일(2006.8.1), 심사시작일(2006.11.7), 심사종료일(2006.11.22)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artisans and merchants on the early Chosŏn Period.

Choi E-Don *

1) Artisans and merchants could not take up a government post.
2) Artisans and merchants could not passed Kwagŏ (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to recruit ranking officials).
3) In case Artisans and merchants took up a government post, they were arranged Miscellaneous Governmental Posts that had not offical Privileges.
4) Artisans and merchants were contempted because of their blood, and the status of Artisans and merchants was transm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Key Words : Artisans and merchants(工商), Miscellaneous Governmental Posts(雜織), Status(身分)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Hannam University